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허용

(안 제13조 별표1 제5호 다)라) 및 가목11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온실·축사 등은 설치가능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, 환경제어설비, 관수·양액 설비 등을 갖춘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은 설치 가능시설로 미규정

나. 개정 내용

○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포함하고, 그에 대한 설치기준을 신설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개발제한구역 주민도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하되, 허가기준을 통해 무분별한 훼손 방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○ 해당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